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7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김선교·김예지·우재준

김성원 • 구자근 • 김석기

김상훈 · 송석준 · 이헌승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 제9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95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5조 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3항 중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를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생 략) 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 제외된 사람(같은 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제7 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지 아 니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 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게 되어 제7조에 따라 등록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신청한 경우 그 뉘우친 정 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훈관계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현행 제(5)항과 동일)

⑤ (생략)